

후 계 농 어 업 인 및 청 년 농 어 업 인
육 성 · 지 원 법 시 행 령 제 정 령 안

2021. 3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경 영 인 력 과)

1. 제정이유

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(법률 제17287호)」이 2020.5.19. 제정되어 2021.5.20.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, 청년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요건을 정함(안 제2~4조)

(1)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의 자로, 영농·영어경력이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함

(2)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의 자로 함

(3) 후계농어업인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생산력 제고, 권익 보호,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함

나. 법 제6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시 법에 규정사항 외에 이전 기본계획 평가 및 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함(안 제5조)

다. 법 제7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,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
라.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후계농어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(안 제7조)

마.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 3. ~ 4.)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후계농어업인의 요건)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령 : 50세 미만일 것
2. 영농·영어경력 : 영농·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

제3조(청년농어업인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40세 미만일 것을 말한다.

제4조(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요건) 법 제2조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”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과 같다.

1.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2.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기관 간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의 대상·범위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후계농어업인의 성별, 연령 및 거주지 등 기본 현황
2.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조사: 5년마다 실시
2. 수시조사: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
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,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7조(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

제8조(지원금의 환수 방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지원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의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

할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, 환수 대상 금액,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로 한다.

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.

④ 그 밖에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를 적용한다. 제9조(권한 위임의 범위)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

2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시행령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 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조(후계농어업인의 요건) 「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 라 한다.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연령 : 50세 미만일 것</u> <u>2. 영농·영어경력 : 영농·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</u>
<u><신 설></u>	<u>제3조(청년농어업인의 요건) 법 제2 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”이란 40세 미만일 것을 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4조(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요건) 법 제2조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”란 「비영리민간단 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</u>

<신 설>

<신 설>

된 단체를 말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과 같다.

1.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2.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기관 간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의 대상·범위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후계농어업인의 성별, 연령 및 거주지 등 기본 현황
 2.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정기조사: 5년마다 실시
2. 수시조사: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-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,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7조(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 등)
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

제8조(지원금의 환수 방법)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지원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의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, 환수 대상 금액, 납부 기한 및 납부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

<신 설>

지원받은 원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로 한다.

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.

④ 그 밖에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를 적용한다.

제9조(권한 위임의 범위)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
2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